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의 주기적 확인 근거 마련,
임원의 결격사유 확대 및 신설〉

■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6201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의 주기적 확인 근거 마련	3
2. 임원의 결격사유 확대 및 신설	8
IV. 입법의 재정영향	15
[참 고 자 료]	1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허성무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1. 21.

3. 회 부 일 : 2026. 1.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 조합원의 요건을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으로 규정하고, 하위법령에서 어업인의 범위를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조합원이 조합에 가입한 후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조합원 자격 요건을 상실하였음에도, 여전히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한 채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조합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조합 내부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형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지구별수협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종류를 확대하고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는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결격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기적으로 조합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자격 미달 조합원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한편, 임원의 결격사유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는 등 수산업협동조합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의 주기적 확인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지구별수협으로 하여금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호의2 신설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조합원의 자격) ① · ② (생략) <u><신설></u>	제20조(조합원의 자격)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u>
③ (생략) ② ~ ④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조합원의 자격으로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고 1년 중 60일 이상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 정하고 있으며¹⁾,

①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②사망한 경우 ③파산한 경우 ④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⑤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
우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당연 탈퇴하도록 규정²⁾하고 있음.

□ 수협중앙회에서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매년 “무자격조합원정
비 추진계획”을 수립·시달하고,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대상으로 매년 반기별로 조합원 탈퇴 사유를 조합원
실태조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만이 있는 어업인이 그 외의 사업장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두고 어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어업인의 범위는 1년 중 60일 이상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탈퇴) ①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에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구별수협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③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

④ 지구별수협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당연탈퇴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무자격조합원 정비 현황 >

- 정비주기 : 매년 반기별 실시
- 정비대상 : 단위수협
- 정비방법 : 조합원 전수조사를 통해 정비지침(해양수산부)에 따라 정비
 - (조합원 가입서류 확인) 조합원 가입신청서, 어업 증명서류(어업허가증 등),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출자금 핵심설명서
- < 조합원자격이 없는 경우 >
 - 어업권을 상실하고 1년을 초과한 경우 무자격조합원으로 정비
 - 1년에 60일 이상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지 않거나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무자격 조합원으로 정비
 - 특히, 면허어장이 없는 시 단위 신고어업인의 경우 해당 어촌계장 확인 절차를 거쳐 어업 종사 여부 확인
- < 사망·파산·금치산자·법인 해산의 경우 >
 - 당연탈퇴 사유 확인 즉시 사망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내부결재 후 조합원 명부에서 삭제
- 행정사항
 - (수협중앙회) 무자격조합원 정비지침을 단위수협에 시달하고, 정비실태 점검 후 그 정비결과를 해수부로 제출
 - (단위수협) 무자격조합원 일제정비 후 정비실적을 수협중앙회에 제출

자료 : 수협

일부 조합에서 조합장 선거를 의식하여 무자격조합원 정비에 소극적으로 대응³⁾하여 선거에 부적절한 영향⁴⁾을 끼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일부 조합원은 조합에 가입한 후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조합원 자격 요건을 상실하였음에도 여전히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한 채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조합에서

3) 현실적으로 무자격조합원 정비로 인해 조합원수가 감소하게 되면 수협의 존립기반이 약화되고, 탈퇴조합원에 대한 지분환급으로 자본이 유출되어 이는 조합의 자기자본 감소와 신용사업 등의 경제성 상실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본잠식으로 출자금 환급이 불가능한 일부 조합의 경우 탈퇴조합원의 반발과 민원 발생 우려로 소극적인 측면이 있음(수협 의견)

[보도자료] “조합장 동시선거 6개월 전인데...수협 무자격조합원 정리 부진”, 소병훈 국회의원실 (2022.10.18.)

4) 무자격조합원을 선거인명부에 선거자로 기재되도록 할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의 사위등재죄에 해당(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조합 내부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음.

이에 주기적으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조합원 탈퇴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무자격조합원을 정비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정비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로 이해됨.

□ 개정안은 조합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제20조에 조합원 자격 확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31조제3항에서 조합원의 당연 탈퇴에 관한 확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수용할 경우 안 제20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31조제3항을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부는 조합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자격 미달 조합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 도입 취지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조합원 관리 주기의 명확화를 위해 개정안의 “주기적으로”를 “매년”으로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수협중앙회는 현행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매년 조합원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매년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자격을 확인할 경우 조합의 과도한 행정 및 인력 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합원 자격 확인 사항인 제31조제2항각호 중 조합원 사망, 파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법인 해산은 법원 및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로서 공공기관이 아닌 조합은 위 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신원조회권은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바, 조합이 실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나 수단은 연계되지 않은 채 매년 확인 의무만 도입될 경우 자격 확인 수단 부재로 인해 의무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함.

< 무자격조합원 정비 현황 >

- 최근 3년간 조합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152,692	150,293	148,090
개인	남자	97,840	96,004	94,252
	여자	54,308	53,746	53,293

- 최근 3년간 무자격조합원 정비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사망	파산 등	무자격
2023년	4,867	2,049	48	2,770
2024년	4,866	1,976	64	2,826
2025년	4,195	2,138	34	2,023

자료 : 해양수산부

2. 임원의 결격사유 확대 및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종류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⁵⁾로 확대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1조).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폭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구별수협회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8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
<신설>	8의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9. ~ 13. (생략)	9. ~ 1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51조는 지구별수협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따른 결격사유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성폭력범죄에 관련해서는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⁶⁾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⁷⁾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조합의 임원⁸⁾은 이사회⁹⁾ 구성원으로서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에

6)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지구별수협에 임원으로 조합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감사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이사의 정수와 조합장의 상임이나 비상임 여부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한 지구별수협이 2년 연속하여 그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9) 제45조(이사회) ① 지구별수협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에 관한 심사
2.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3. 업무 집행에 관한 기본방침의 결정
4. 부동산의 취득·처분 또는 이에 관한 물권의 설정.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5. 경비의 부과 및 징수 방법

관한 심사,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조합의 재산권 처분 등 조합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높은 수준의 책임성이 요구되며,

조합 임원의 성 관련 비위 또는 마약 관련 범죄 발생 시 조합 전반에 대한 조합원 및 국민의 신뢰가 심각히 훼손될 수 있으므로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여 성폭력·마약 관련 범죄 행위자의 임원 임명 제한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마약류관리법」 적용 관련 결격사유 비교 >

구분	국가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군인사법	모자보건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성폭력 범죄 결격 사유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중 제37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7.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8. 간부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9.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10.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11. 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 5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분	국가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군인사법	모자보건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그 형·치료감 호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집 행이 종료되거 나 집행이 유 예·면제된 날 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치료감호가 확 정된 사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그 형·치료감 호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집 행이 종료되거 나 집행이 유 예·면제된 날 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약류 관련 결격 사유	없음	마약·대마· 향정신성의약 품 중독자	마 약·대 마 또는 향정신 성의약품 중 독자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류중 독자	마약류관리법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중독된 사람
규제 대상	국가공무원 임용	학교 교사 자격 취득	장교·준사관· 부사관 임용	산후조리 도우미 / 산후조리원 종사자	장애아 돌보미

□ 성폭력범죄 관련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공무원 및 교사, 군인, 장애아 돌봄인력 등 직업의 특성상 고도의 도덕성이 필요한 직업과 달리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조합 등 직능단체의 경우 성폭력범죄 관련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농협·신협), 현행법에서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과 같이 업무와 관련된 성폭력범죄만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법 제51조제1항제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일부 포함될 수 있음.

한편, 임원 결격사유 대상 성폭력범죄 확대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 관련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농협·신협), 수협과 같은 수준의 결격사유(산림조합 등 다수)를 규정¹⁰⁾하고 있는 등 협동조합의 경우 전반적으로 공무원 및 교사, 군인, 장애아 돌봄인력 등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그런데, 임원 중 조합장과 이사는 이사회 의 일원으로서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에 관한 심사와 조합의 재산권에 관한 의결권을 지니고, 감사는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에 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향후 수협을 비롯한 다른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종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0) ○ 성폭력범죄 관련 임원의 결격사유 미규정 :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시 임원 결격사유 규정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선주상호보험조합, 연초생산협동조합

□ 「마약류관리법」 결격사유 신설과 관련하여,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관리법」, 「사회복지사업법」, 「수의사법」 및 「의료법」, 「초·중등교육법」과 달리 현행법 등 협동조합 관련 법령에서는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경우를 결격사유로 두고 있지 않은데, 건설기계조종사, 의료인, 교사, 교육공무원 등 마약류 중독 자체가 직무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특수직종공무원이 아닌 협동조합의 임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특히, 안 제8조의3은 현행법 제51조제1항제5호11)와 달리 3년 경과 규정이 없어 오히려 마약사범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는 다른 협동조합과 달리 수협의 경우만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 종류를 확대하고, 「마약류관리법」 결격사유를 신설하려는 것은 상호금융기관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함.

1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구별수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IV. 입법의 재정영향

-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¹²⁾.

문 의 처
02)6788-5419

12)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 추진 배경

-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당연 탈퇴하도록 규정(수협법 제31조제2항)하고 있으나

* 수협법 제20조 ①조합의 구역안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고, ②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두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

- 일부 회원조합에서 조합장 선거를 의식하여 무자격조합원 정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선거 관련 소송 및 민원 야기

* 지분환급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조합 자산과 부채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자본잠식 조합에서는 출자금 환급이 불가하여 조합원 정비에 어려움 발생

□ 주요 내용

- (중앙회) 정비추진계획 수립하여 회원조합에 통보하며, 분기별로 정비실적 확인 및 무자격조합원 정비내용 점검*

* 조합원 가입 시 자격 준수 여부 확인 무자격조합원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정비이행 적정성 등

- (회원조합)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 실시, 당연탈퇴 대상에게 서면 통지하고 지분 환급절차 등 이행 후 실적 제출

- (조합원 가입서류 확인) 조합원 가입신청서, 어업 증명서류(어업허가증 등),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출자금 핵심설명서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의 주기적 확인 근거 마련 관련]

「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탈퇴)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③ 제43조에 따른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제16조(탈퇴) ①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의 뜻을 미리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산림조합법」

제26조(가입 및 탈퇴) ①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파산하였을 때

4. 피성년후견인이 되었을 때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 ③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임원의 결격사유 관련]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64조제1항이나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규정된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산림조합법」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25조제1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삭제